

장학금 지급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,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장학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설치)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장 장학금의 구분 및 종류

제4조(구분) 장학금은 교내·외 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제5조(교내장학금의 종류)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(전면개정 `20.3.24.)

1. 이사장장학금
2.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
3. 성적우수장학금
4. 체육특기장학금
5. 국가유공자장학금 / 북한이탈주민 장학금
6. 학생회장장학금
7. 교원 및 직원복지장학금
8. 학군단장학금
9. 공로장학금
10. 외국인학생장학금(개정 `24.9.1.)
11. 교내봉사장학금
12. VERUM장학금
13. 국가시험특별장학금
14. 총장특별장학금
15. 가톨릭관동가족장학금
16. 교외봉사장학금
17. 교원양성특별장학금
18. 해외연수·유학장학금
19. 관·군·산학협력장학금(개정 `24.2.24)
20. 어학우수장학금
21. 편입생장학금
22. 교환학생장학금

23. 지역장학금
24. 학교장추천장학금
25. 커리어개발장학금
26. 성적향상장학금
27. (삭제 '24.9.12)
28. 동문사랑장학금
29. 면학장학금
30. 글로벌장학금
31. 모범다독자장학금
32. 취·창업지원장학금
33. 선취업후진학자특별전형장학금
34. 성인학습자 및 만학도 장학금(개정 '24.2.24)
35. 계약학과 장학금(신설 '24.2.24)

② 교내장학금의 선정 기준과 내용은 [별표 1]에 따른다.

제6조(교외장학금의 종류)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,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가 장학대상자를 지명하거나 선정 의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[별표 2]와 같다.

제3장 장학금의 지급

제7조(신청자격) ① 재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자격을 가진다.

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
1. 휴학자
2. 징계처분이 종결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
제8조(신청절차)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장학종류별로 정해진 양식과 추천절차에 따라 학생·취업지원처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(개정 '18.6.1.)

제9조(대상자) ① 장학대상자는 학업성적과 품행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.

② 장학대상자는 직전학기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.(개정 '15.1.1.)

③ 성적포기로 인한 장학생 자격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.

④ 학기불일치 조기복학자의 8차학기 성적우수장학금은 [별표 3] <성적우수장학생 선정기준>을 따른다.

⑤ 장학대상자가 전과할 경우에는 전입학부(과)의 장학금을 적용 받는다.

⑥ 장학대상자가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장학혜택이 소멸된다.

⑦ (삭제 '24.9.1.)

⑧ 공로장학금, 총장특별장학금, 교외봉사장학금, 어학우수장학금, 커리어개발장학금, 면학장학금, 글로벌장학금, 모범다독자장학금, 취·창업지원장학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(신설 '18.3.1.)(개정 '19.9.24., '20.3.24., '24.9.1.)

제10조(선정기준) 장학생 선정기준은 [별표 1]의 수혜자격기준과 같다.

제11조(교외장학생의 선정) ① 장학재단으로부터 수혜자가 지정된 교외장학생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.

② 미지정 장학금은 추천 분야별, 대학별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·취업지원처장이 배정하고 학부(과)장을 거쳐 학장이 추천한다.(개정 `18.6.1.)

제12조(수혜범위의 제한) ① 장학금의 최대수혜범위는 등록금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교외장학금은 수여기관의 기준을 따른다.

② 전항의 수혜범위에서 학생회장학금, 교내봉사장학금, 총장특별장학금, 커리어개발장학금, 공로장학금, 교외봉사장학금, 글로벌장학금, 모범다독자장학금, 취·창업지원장학금, 어학우수장학금, 면학장학금은 그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. (개정 `16.1.1., `16.12.13., `17.9.1., `20.3.24.)

③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‘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’의 경우, 수혜자에게 유리한 장학금 1종을 지급 한다(신설 `25.5.1).

제13조(수혜기간의 제한)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학기로 하되,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4조(지급시기) 교내장학금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유가 없는 한 학기마다 등록전에 지급한다.

제15조(사무보고) 학생·취업지원처장은 학기별로 장학사무와 지급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`18.6.1.)

제16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1.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입학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사무처 교(임)직원, 배우자, 직계자녀 및 명지학원 산하기관 재직자, 직계자녀에게는 종전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.

장학금 종 류	수 혜 자 격 기 준	장학금액	비고
교원 및 직원 복 지 장학금	제1종 ① 학교법인 명지학원 사무처와 명지대, 명지전문대의 교원 및 직원과 교원 및 직원의 배우자, 직계자녀 ② 우리 대학교 근무년수를 포함하여 명지학원 산하 기관에서 25년 이상 근무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퇴직한 교원 및 직원의 직계자녀 ○ 위의 각호 대상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0이상인 자	등록금 전액 (입학금 포함)	
	제2종 (제1종을 제외한 명지학원 산하기관 재직자·직계자녀) ① 제1종 대상교를 제외한 명지학원 산하 각급학교와 수익사업체의 재직자와 직계자녀. 다만,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0이상인 자	등록금 반액 (입학금 제외)	
편입생 장학금	1. 명지학원 산하 대학장학금 ① 명지학원 산하 대학 졸업(예정)자로 전적대학 성적 3.0 이상인 자	등록금의 50% (입학금제외) 사범대학, 의과대학은 입학금만 면제	매 학 기 성적 평 점 평 균 3.0 이상

2.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3.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4.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5.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[별표 4] 성적우수 장학생 선정기준은 2017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6.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7.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8.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5-0-4~4 장학금 지급 규정

9.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10. 이 규정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11. 이 규정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12. 이 규정은 201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13. 이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14.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15.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[별표1]제34호의 성인학습자장학금의 장학금액은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까지 입학한 자는 종전규정에 의거 ‘등록금의 범위 내’에서 ‘등록금의 30%’를 지급한다.

부 칙

1.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[별표1]장학생 선정기준에서 “체육특기장학금”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연번	장학금 종류	수혜자격기준	장학금액	비고
4	체 육 특 기 장 학 금	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(개정 '22.9.1)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0이상(개정 '22.9.1) <삭제 '22.9.1.>	A:등록금 전액 B:등록금의 70% C:등록금의 30% D:등록금의 10% (신설 '22.9.1)	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①(경과조치) [별표1]제34호의 성인학습자장학금의

휴먼서비스대학 편입학년도가 2022학년도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(종전 규정)

장학금종류	수혜자격기준	장학금액
성인학습자장학금	휴먼서비스대학 성인학습자전형 모집단위 학생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 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- 단, 신·편입생은 입학한 1학기 전원 지급 <지급시기> - 매학기 중간고사 이후	등록금 실납입액의 30%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(개정 `15.1.1. `15.11.24. `16.1.1. `16.12.13. `17.9.1. `18.3.1. `19.5.28. `19.5.28., `19.8.27., `19.9.24., `20.3.24., `21.3.1. `21.4.20., `22.3.1., `23.3.1, `24.2.24, `24.9.1, `24.12.1)

〈장학생 선정 기준〉

연번	장학금 종류	수혜자격기준	장학금액	비고
1	이 사 장 장 학 금	신입생 선발시 선정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.5 이상 (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	등록금 범위내	
2	신 입 생 성적우수 장 학 금	① 신입생 모집단위별 성적우수자 (재학중 학기마다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.5 이상을 유지해야 하 며 3.5 미만일때는 해당학기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다시 지급) ② 특별한 사유로 입학처장과 학생취업지원처장이 협의, 추천하 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	입학요강 참조	
3	성적우수 장 학 금	지급 받을 학기의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에게 각 학부(과), 학년 별로 등록 학생수에 따라 지급	A:등록금의 100% B:등록금의 70% C:등록금의 50%	
4	체 특 장 학 금	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(개정 `22.9.1)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0이상(개정 `22.9.1) <삭제 `22.9.1.>	A:등록금 전액 B:등록금의 70% C:등록금의 30% D:등록금의 10% (신설 `22.9.1)	
5	국 가 유 공 자 장 학 금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규정된 학 생 <선발 기준>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공자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<지급기준> 학업성적이 학기마다 70점(평점평균 1.60) 이상인 자 (신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	등록금 전액	
	북 한 이 탈 주 민 장 학 금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5조 에 규정된 학생 <선발 기준>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및 북 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 대상자 <지급기준> 학업성적이 학기마다 70점(평점평균 1.60) 이상인 자 (신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		
6	학 생 회 장 학 금	학생회와 언론사 등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 자치기구의 모든 규 정에 따라 선출 임명된 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	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함	
7	교 원 및 직 원 복 지 장 학 금	① 우리 대학교의 교원 및 직원과 배우자, 직계자녀 ②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원 및 직원 의 직계 자녀 ③ 우리 대학교에서 재직 중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한 교원 및 직원의 직계자녀 ④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원 및 직원 본인과 배우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	①~③ : 등록금 전액 ④ 등록금의 50%	

연번	장학금 종류	수혜자격기준	장학금액	비고
		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(신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		
8	학군단 장 학 금	학군단 무관후보생으로 학군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	주관부서 선발기준 에 따름	
9	공 로 장 학 금	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의 명예를 대내·외에 빛낸 자와 학교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<지급기준> ①호의 경우,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	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함	
10	외국인 학생 장 학 금	<한국어트랙> ① 학부 정규 과정의 외국인으로 TOPIK(PBT 또는 IBT) 3급 자 격증 취득자,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 평가 61점 이상 취득자,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급 과정 이상 이수자 ② 학부 정규 과정의 외국인으로 TOPIK(PBT 또는 IBT) 4급 자 격증 취득자,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 평가 81점 이상 취득자,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급 과정 이상 이수자 ③ 학부 정규 과정의 외국인으로 TOPIK(PBT 또는 IBT) 5급 자 격증 취득자 ④ 학부 정규 과정의 외국인으로 TOPIK(PBT 또는 IBT) 6급 자 격증 취득자 ⑤ 외국인 신입생 특별장학금 : 가톨릭관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교육과정 수료 및 한국어능력시험(TOPIK(PBT 또는 IBT)) 3급 이상을 취득한 어학연수생이 우리대학 학부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<영어트랙> ① TOEFL 530(CBT 197, iBT 71), IELTS 5.5, CEFR B2, TEPS 601점(NEW TEPS 327점) 이상 ②TOEFL 603(CBT 250, iBT 100), IELTS 7.0, CEFR C1, TEPS 701점(NEW TEPS 387점) 이상 <지급기준>(트랙 공통)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0 이상	<한국어트랙> ①등록금의 40% ②등록금의 60% ③등록금의 80% ④등록금의 100% ⑤첫 학기 등록금 의 100% <영어트랙> ①등록금의 40% ②등록금의 60%	
11	교내봉사 장학금	교내 특정부서에서 실습·연구 등에 참여하여 봉사하고자 희망하 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<선발기준> - 경제적 사정 곤란자 우선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	주관부서 선발기준 에 따름	
12	VERUM 장 학 금	① 학생취업지원처에서 각 학부(과) 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 <선발기준> - 경제적 사정 곤란자 우선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② (삭제 `15. 1. 1.)	700,000원 이내 (등록금 범위 내)	
13	국가시험 특별 장 학 금	① 신입생 선발시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우리 대학 교에서 반영하는 영역 (과목)에서 합이 6등급 이내의 성적(의학 과, 간호학과 제외)으로 입학한 후 국가시험을 준비 중인 자 ② 재학 중 국가고시 1차 시험(5급 공개경쟁채용시험, 공인회계 사 등)에 합격한 자(의학과, 간호학과 제외) ③ 국가시험지원센터에 입실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여 국가 시험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※ 국가시험지원센터 입실생 5명 이내	A급(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각 영역에서 모두 1등급) : 학부4년 ,석사과정 등록금 전액 면학장려금 : 매월 30 만원, 생활관 입실 (숙식제공) B급(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영역에서 합 이 6등급 이내의 성 적) : 학부 4년 등록 금 전액	

5-0-4 ~ 8 장학금 지급 규정

연번	장학금 종류	수혜자격기준	장학금액	비고
		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.5 이상인 자 (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	면학장려금 : 매월 20만원 생활관 입실 (숙식제공) B급 및 일반 학생 중 국가고시 1차 합격자 : 생활관 입실(숙식제공), 학부, 석사과정 등록금 면제 C급 : 30만원	
14	총장특별장학금	탁월한 재능으로 우리 대학교의 발전과 학교 명예를 드높이는데 공헌하였거나 품행이 단정한 자로 총장 이 특별히 인정한 개인이나 단체	별도로 정함	
15	가톨릭관동가톨릭 장학금	① 가족(부모, 형제자매, 부부 등) 중 2명이 학부에 재학 중인 자 ②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가족(부모, 형제자매, 부부 등) 3명 이상이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	학부재학생 중 가족(부모, 형제자매, 부부 등) 중 2명 재학시 1명에게 등록금의 50 % 지급 대학원생포함 가족(부모, 형제자매, 부부 등) 중 3명 이상 재학 시 1명에게 등록금의 70%지급	
16	교외봉사 장학금	① 사회봉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 하계 및 동계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자	주관부서 선발기준에 따름	
17	교원양성특별 장학금	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각 영역(과목)에서 1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신입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로 교수나 전문직에 진출하려는 자(의학과, 간호학과 제외)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.5 이상 (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	* 재학중 혜택 대학4년, 석사, 박사과정 등록금 전액, 생활관제공(숙식제공), 면학장려금:매월 50만원 학부재학기간 동안 방학중 1회의 단기 어학연수 기회부여, 학부재학기간중 외국 자매대학 교환학생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1년간 교환학생장학금 지급(학비, 생활비) * 해외유학 혜택(석, 박사과정) 관련세부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명문 대학원에 유학할 경우 왕복항공료, 초기정착금, 우리 대학원 등록금에 해당하는 학비 지급	
18	해외연수·유학 장학금	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자 ② 우리 대학교와의 자매결연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	등록금 범위 이내	
19	관.군.산학협력 장학금	①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공무원(군인) 및 산학협력기관에서 재직중인 자 ② 군장기 복무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(신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	등록금50%	
20	어학우수 장학금	영어(토플, 토익)·일어·중국어 등 어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자. (다만, 재학 중 1회에 한함)	50만원	

연번	장학금 종류	수혜자격기준	장학금액	비고
		<지급기준> 신청 대상: 3.4학년		
21	편입생 장 학 금	의과대학을 제외한 편입생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.0 이상	등록금의 50%	
22	교환학생 장 학 금	<언어별 자격기준> 1. 영어:NEAT 1급 196점이상, TOEIC 650이상, TOEFL(IBT/CBT/PBT) 64/180/507이상, IELTS 6.0이상, TEPS 520이상, TEPS-S 110이상, TOEIC-S 110이상, OPIc IM1이상 2. 중국어:신HSK5급이상 3. 일본어:신JLPT N1 /JPT 660이상 (다만, 연변대는 별도 적용함) 공인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며, 유효기간은 시험시행일로부터 2년	한학기당 50만원 (1년지급)	
23	지 역 장 학 금	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자(최종 등록자)(의학과(의예과), 간호 학과 제외) <지급기준>(2회차 지급시)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3.0 이상	150만원 (재학 중 2회)	
24	학교장 추천 장 학 금	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고교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가톨릭계 고교 출신 자	100만원(1회)	
25	커리어 개발 장 학 금	① 국가기관 자격증 취득자 또는 공연, 전시 및 경진대회 입상 한 자 중 학과 또는 부서의 제청으로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② 전국 규모로 시행되는 대회에서 총장 명의로 수상하는 입상 자 ③ 우리 대학교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성실히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④ 튜터링(멘토링)에 참가한 자 ⑤ 학생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	① 50만원 이내 ②~⑤ 주관부서 선 발기준에 따름	
26	성적향상 장 학 금	지급받을 학기의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그 이전 직전학기 의 장학성적 평점평균에 비해 향상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<지급기준> ① A급 : 평점평균 1.0이상 향상 ② B급 : 평점평균 0.7이상 향상 ③ C급 : 평점평균 0.5이상 향상 ④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	A급:10만원 B급:7만원 C급:5만원	
27				삭제
28	동문사랑 장 학 금	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(신·편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)	등록금의 50% 단, 의학과,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 제외	
29	면학 장 학 금	각 대학, 학과 및 생활관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추천된 자	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	
30	글로벌 장 학 금	국제화 프로그램인 해외연수, 해외문화탐방 연수자로 선발된 자	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	
31	모범 다독자 장 학 금	우리 대학교에서 시행한 독후감 경시대회 및 전공 관련 도서 다독자로 선발된 자	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	
32	취·창업 지원 장 학 금	① 우리 대학교 및 외부 주관의 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자 ② 우리 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및 창업활 동지원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따라 선발된 자	주관부서 선발 기준에 따름	
33	선취업 후진학자 특별전형	선취업 후진학자 전형 모집단위 입학생으로 재학기간 중 산업 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<지급기준>	등록금의 50%	

5-0-4 ~ 10 장학금 지급 규정

연번	장학금 종류	수혜자격기준	장학금액	비고
	장 학 금	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누적 학기 총평점평균 2.5 이상 (신입생의 첫 학기는 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거 선정)		
34	성인 학습자 및 만학도 장 학 금	휴먼서비스대학 성인학습자전형 및 만학도전형 모집단위 학생 단 편입생은 제외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.5 이상 -단, 신입생은 입학한 1학기 전원 지급 <지급시기> -매학기 중간고사 이후	등록금 실납입액의 30%	
35	계약학과 장학금	계약학과 모집단위 학생 <지급기준> -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(4학년은 12학점) 이상 - 단, 신입생은 입학한 1학기 전원 지급	등록금의 30%	

[별표 2]

〈교외장학금〉

연번	장 학 금 종 류	수 혜 자 격 기 준
1	KT IT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2	강릉제일교회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3	건축학부 교수 출연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4	공군조종장학생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공군에 지원한 학사장교 예정자
5	가톨릭관동사랑조성 기금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6	가톨릭관동장학회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7	관맥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8	국가근로장학금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,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
9	군장학생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육군에 지원한 학사장교 예정자
10	내곡주민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11	농촌희망재단 장학금	농·어촌 거주자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12	농협문화복지 재단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13	농협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14	대한건설협회 장학금	토목·건축관련 학과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15	동양장학재단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사상이 건전하나 학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삼척시 소재고교 졸업자로서 부모가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
16	동창회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17	드림사랑장학금 (차상위계층)	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- 신입생 : 고교내신 1/2이상이 6등급이내 또는 수능3개영역(언어, 수리, 외국어) 6등급이내 - 재학생: 취득학점 12학점 이상, 백분율평균 80점이상 (단, 장애인(본인)은 70점 이상)
18	디딤돌장학회장학금	장애가정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19	미래로장학금 (기초생활수급자)	기초생활수급대상자 - 신입생 : 고교내신 1/2이상이 6등급이내 또는 수능3개영역(언어, 수리, 외국어) 6등급 이내 - 재학생: 취득학점 12학점 이상, 백분율평균 80점이상 (단, 장애인(본인)은 70점 이상)
20	사랑의 띠잇기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며, 졸업 후 5년내에 상환하여야 함 · 추천인원 : 각 단과대학 1명
21	삼화지봉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22	서암복지장학재단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23	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출연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24	신라문화재단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직원자녀 장학금
25	신세계(자판기)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26	신양문화재단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27	아산사회복지사업 재단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학업성적이 3.5 이상인 자

5-0-4 ~ 12 장학금 지급 규정

28	영풍문화재단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학업성적이 3.0 이상인 자
29	옥포장학회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관련학과 학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
30	우당장학금	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31	우덕재단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32	우학재단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33	이공계 국가장학금	이공계열 재학생이며, 입학성적 중 과학탐구영역과 수리영역의 성적이 기준에 준하는 자
34	인문계 국가장학금	인문계열 신입생,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
35	정수장학회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 학업성적이 5% 이내인 자
36	정인옥학술재단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37	주심장학재단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38	지도자육성재단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39	정송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40	촛불장학회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41	학군동지회장학금	ROTC 재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
42	한국관광협회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43	한국소방안전협회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44	해군장학생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해군에 지원한 학사장교 예정자
45	등록금장학금	강원도 고교 출신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기초 차상위~5분위에 해당하는 자
46	보건장학금	보건의료 관련 학과((의학 · 간호학)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
47	본솔김종한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48	산학재단디딤돌장학금	신입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49	의용소방대장학금	지자체 의용소방대 자녀
50	서울희망장학금	서울 시민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 층,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인 자
51	성보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52	쌍용곰두리장학금	예체능 분야 전공학생으로 국내외 예.체능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장애 학생
53	해성문화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

[별표 3] (개정 `14.9.1., `16.12.13., `20.3.24.)

〈성적우수장학생 선정기준〉

재학생수 (등록학생수)	장학금액 (감면비율)	선발인원	비 고
10명 미만	50%	1	다만,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.0 이상인 자
10명-19명	70%	1	
20명-29명	100%	1	
30명-39명	100%	1	
	50%	1	
40명-49명	100%	1	
	50%	2	
50명-59명	100%	1	
	50%	3	
60명-69명	100%	1	
	70%	1	
	50%	2	
70명-79명	100%	1	
	70%	1	
	50%	3	
80명-99명	100%	1	
	70%	2	
	50%	3	
100명-129명	100%	1	
	70%	2	
	50%	5	
130명-159명	100%	1	
	70%	3	
	50%	6	
160명-179명	100%	1	
	70%	3	
	50%	9	
180명-199명	100%	1	
	70%	4	
	50%	9	
200명 이상	100%	1	
	70%	5	
	50%	10	